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	--

발의연월일 : 2009. 8.

발 의 자 : 김 영 신 의원외 5인

1. 제안이유

마포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적응 등 우리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 환경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 나.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마포구에 다문화가족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6조)
- 다.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
- 라.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

3. 제정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 제8937호 2008.03.21) 제3조

4. 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필요 (소관부서와 협의 완료)

6.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 : 해당없음
- 나. 관계법령 : 따로붙임
- 다. 예산조치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의견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기본적 사회적응 정보제공 및 교육, 직업교육 · 훈련
3.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및 가족 생활교육 실시
4.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 어려움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 사업
5. 결혼이민자등에 필요한 보건 · 의료서비스 지원
6. 다문화가족 아동의 보육 및 교육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시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다문화가족지원심의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조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다문화가족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3.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 · 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위탁) 구청장은 제14조의 위탁에 관하여는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한다.

제16조(민간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이 행복한 마포 프로젝트！”

마포구



Digital Mapo

여성행복 마포

수신자 마포구의회의장
(경유)

제목 「마포구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서 통보

1. 마포구의회-3699(2009. 8.20)호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과 관련 의견조회'와 관련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따로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붙임 :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서 1부. 끝.

마포구청장

관인생략

★담당자	배효안	여성정책팀장	류보현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주민생활국장	08/28 황종익
협조자	법무팀장	장기탁	대외협력팀장	조태영			
시행	가정복지과-22226	(2009.08.28.) 접수	마포구의회-3809		(2009.08.28.)		
우	121-7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난지도길 30 (성산동 370)		/ http://www.mapo.seoul.kr				
전화	02-3153-8924	/ 전송 02-3153-8949	/ hi0503@mapo.go.kr		/ 공개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서

조례안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의원	복지도시위원회 김영신 의원 등 6명
소관부서	가정복지과
상임위원회명 및 상정예정일	복지도시위원회
사전보고 단계	
주요내용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교육, 홍보 등)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족 심의위원회 설치 사항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민간다문화가족지원단체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사항
검토의견	<input type="checkbox"/> 조례제정 이의 없음.